

# 행 정 자 치 부

## 시 정 요 구

제 목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이행

기 관 명 부산광역시(본청, 부산○○공사)

내 용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sup>97)</sup> 수립권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목표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

97)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부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 ○○○○추진단(구 ○○○○과)<sup>98)</sup>은 기장군 ○○읍 일대 약 366만㎡를 2005.3.9. 관광단지로 지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0호) 하였으며, 2006. 4. 5. 부산○○공사<sup>99)</sup>에서 신청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000호)하였다.

부산○○공사는 ○○○관광단지 조성사업<sup>100)</sup> 1단계 및 2단계 사업을 각각 2011. 4월과 2014.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16. 5월에는 3단계 사업을 부분준공하

98) 관광단지 지정 당시에는 ○○○○과였으며, 현재는 ○○○○추진단으로 조직명칭 변경

99) 조성계획 신청 시에는 부산광역시 ○○○○공사였으며, 현재는 부산○○공사로 조직명칭 변경

100)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황

- 위 치 : 기장군 ○○읍 ○○·○○리 일원, 사업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 사업규모 : 관광단지 조성 366만㎡(테마파크, 호텔, 복합쇼핑몰, 골프장 등)
- 사 업 비 : 9,144억 원(보상비 6,058, 공사비 등 3,086억 원)
- 주요 공사내용 : 관광단지 조성공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해안관광도로 개설공사 등

고, 정부합동감사 시에는 4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표 1】 ○○○ 관광단지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추진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체 : '06년 ~ '19년</li> <li>· 1단계 : '06년 ~ '11년</li> <li>· 2단계 : '06년 ~ '14년</li> <li>· 3단계 : '06년 ~ '16년</li> <li>· 4단계 : '06년 ~ '19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단지('11.04. 준공)</li> <li>· 랜드마크 호텔, 프리미엄 콘도('14. 12. 준공)</li> <li>· 도로 등 기반시설, 복합쇼핑몰, 과학관 등</li> <li>· 골프장, 테마파크 등</li> </ul> |

※ 부산광역시 ○○○○국 ○○○○추진단 제출자료 재구성

정부합동감사 시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변경 포함)계획의 공공하수도설치 승인조건 및 처리예정 하수처리장의 유입유량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부산○○공사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인가 신청 시 ○○○관광단지의 계획오수량(4,747m<sup>3</sup>/일)을 ○○하수처리장<sup>101</sup>)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10. 6. 11. ○○○관광단지의 계획오수량 변경(4,747→5,464m<sup>3</sup>/일) 등에 따라 ○○○○추진단 및 ○○○○과(구 ○○○과)<sup>102</sup>)로 각각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10)” 반영을 요청하였다.

○○○○국 ○○○○과는 ○○○관광단지 등 ○○하수처리장 유입유량 증가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처리분구 계획오수량(2,547m<sup>3</sup>/일)을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sup>103</sup>)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2010년도 하수도정

101) 처리용량 : 27,000m<sup>3</sup>/일, 가동일: 2007. 2. 1., 운영관리대행: 부산환경공단, 처리공법: PL-2공법  
처리구역 : ○○읍, ○○면, ○○동

102) 협의의견 제출 당시에는 ○○○과였으며, 2013년 ○○○과로 조직명칭 변경

비기본계획”을 변경(2015년까지 처리구역 변경을 위한 중계펌프장 정비 및 이송관로 설치)하였으며, ○○처리분구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위한 중계 펌프장 정비 및 오수관로 매설을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조건으로 관광개발추진단에 통보(2010. 12. 6.)하였고, 2011. 1. 12. ○○○○추진단에서도 부산○○공사에 동일한 승인조건을 통보하였다.

이후에도, 부산○○공사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해 ○○○○추진단에 계획오수량을 총 4회에 걸쳐 변경승인을 요청하였고,○○○○추진단 및 ○○○○과는 기존의 계획오수량 변경 승인조건(하수처리구역 변경을 위한 ○○ 중계펌프장 정비 및 이설관로 매설)을 부산○○공사에 통보하였다.

**【표 2】**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오수량 변경현황

| 년도                           | 2006.3월 | 2010.06월 | 2011.3월 | 2013.7월 | 2014.7월 | 2015.8월 |
|------------------------------|---------|----------|---------|---------|---------|---------|
| 계획오수량<br>(m <sup>3</sup> /일) | 4,747   | 5,464    | 5,526   | 5,448   | 5,556   | 8,082   |

※ 부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추진단 및 ○○○○과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3단계 사업 준공일(2016. 5. 20.)까지 ○○처리분구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위한 중계펌프장정비 및 이송관로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 시 관련부서와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의의견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여 부분 준공을 하였으며, ○○처리분구 하수처리구역 변경내용이 반영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처리구역 변경을 위한 ○○ 중계펌프장 정비 및 이송관로 설치)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도 미이행되어 ○○하수처리장의 2016년 기준 평균 유입하수량(27,428m<sup>3</sup>/일)이 처리용량(2

103) 처리용량 : 65,000m<sup>3</sup>/일, 가동일: 1996년 9월 1일, 운영관리대행: 부산○○공단  
처리공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처리구역: 해운대구 ○동, ○동

7,000m<sup>3</sup>/일)을 초과하게 되었고, 동 기간 동안 198일이나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됨으로써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수질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표 3】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현황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평균 하수량(m <sup>3</sup> /일) | 22,290 | 23,953 | 27,428 |
| 최대 하수량(m <sup>3</sup> /일) | 26,947 | 27,517 | 31,120 |
| 최소 하수량(m <sup>3</sup> /일) | 18,542 | 20,907 | 23,589 |
| 처리용량 초과 유입일수              | 71일    | 46일    | 198일   |

※ 부산광역시 ○○○○국 ○○○○과 제출자료 재구성

○○○○국 ○○○○추진단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주무부서로서 부산○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광단지의 단계별 준공검사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시 공공하수도 설치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국 ○○○○과는 관광단지 조성계획(계획오수량) 변경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 시 ○○처리분구 중계펌프장 이송관로 설치공사 완료시기(2015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부산○○공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2016. 3. 29.에서야 승인조건 조기 이행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16. 4. 29.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조건 조속이행 관련 회의를 거쳐 2016. 5. 24. “○○○관광단지 3단계 사업준공 검토보고”와 2016. 6. 23. “○○○관광단지 오수처리 관련 ○○이송관로 설치 계획보고”를 통해 ○○○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원인자(부산○○공사)부담금으로 ○○

처리분구 중계펌프장정비 및 이송관로 설치를 ○○○○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2017. 3. 20.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외 1건”의 용역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부산○○공사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10)” 시 ○○처리분구 중계펌프장 정비 및 이송관로 설치를 승인조건으로 통보 받았음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 부산○○공사 사장은

[시정] ①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부서(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10)” 승인조건을 조속히 이행하시고, ○○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 증가로 인한 시설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단지 및 하수처리구역의 하수발생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하수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